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(공포)

☐ 제 명 :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☐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
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('23.7.25.)된 사항을 반영하여
정비하려는 것임.

☐ 주요내용

- 가.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시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도록
하는 사항 (안 제5조)
- 나.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
- 다.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(안 제8조)

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4. 5. 20.)에서 의결
된 「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」을 다음
과 같이 공포한다.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이 봉 락

2024년 5월 27일

인천광역시의회 규칙 제54호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공무국외출장에”를 “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”로, “의장은 의
원과 교육계·법조계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관계자로”를 “교육계·법조계
·언론계·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과 의원으로”로
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한다.

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의장은 회의록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